

# 예산총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8,112,553	13,143,377
일반회계	390,773,710	11,723,211
특별회계	47,338,843	1,420,165
기타특별회계	47,338,843	1,420,165
상수도 특별회계	23,051,041	691,531
수질개선 특별회계	17,758,958	532,76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6,835	12,205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345,970	40,3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04,808	30,144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56,697	13,701
주차장 특별회계	3,132,500	93,975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82,034	5,46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371,42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0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